

# 학생회 회칙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해전대학교 학생회(이하“학생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학생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교시에 입각한 학생자치활동의 실천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및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4조 (구성단체)

학생회의 구성단체로는 총학생회,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로 구성한다.

### 제5조 (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제6조 (금지활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제7조 (효력정지)

본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 제8조 (기능)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술연구활동
- ② 예술, 체육, 취미활동
- ③ 각종봉사활동
- ④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및 각종 재난시 방재 및 지원활동

- ⑤ 기타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 친목 등 학생자치활동

## 제2장 총학생회

### 제1절 조직, 임원, 직능

#### 제9조 (조직 및 임원)

- ①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장 1인, 총부학생회장 1인을 둔다.
- ② 학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에 따른 집행 부서를 두고 그 부서 및 분장업무는 [별표1] 과 같다.

#### 제10조 (직위)

- ①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며 집행부의 회장이 된다.
- ② 총부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11조 (신분보장)

총(부)학생회장은 탄핵소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위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 제12조 (정·부학생회장 대행)

총(부)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집행부의 각부장이 따로 [별표1] 의 순서에 의하여 보궐 선거전까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단, 잔여 임기가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대의원 의장이 대행한다.

#### 제13조 (업무 및 권한)

- ① 총학생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 ② 총학생회장은 집행부서의 장을 지휘 통솔한다.
- ③ 총학생회 제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심의된 예산을 집행한다.
- ④ 총학생회 집행부의 각 부장, 차장을 임명한다.

#### 제14조 (간부승인)

총학생회의 총학생회장, 총학생부회장, 각 부서의 부장에 대해서는 간부승인을 한다.

## 제2절 집행위원회

### 제15조 (구성)

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써 총학생회장, 총학생부회장, 각 부서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 제16조 (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 ② 사업계획
- ③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 ④ 회의개정 및 수정발의
- ⑤ 기타 중요한 사항
- ⑥ 특별한 사정으로 대의원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거쳐 대의원회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 제17조 (회의)

집행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학교당국의 요구가 있을 때나 또는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 제3절 재 정

### 제18조 (회비 등)

- ①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전 항의 회비는 학생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③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의 금액은 매년 대의원회에서 정하되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회비의 수납 및 지출 등에 관한 사무처리는 학교당국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제19조 (예산편성)

- ① 총학생회장은 회계년도 개시 10일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한 후 총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 ② 대의원회는 예산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통과하여야 한다.
- ③ 예산안이 소정 기일 내에 통과하지 못하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은 총장의 승인을 거쳐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다.
- ④ 예산 성립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단,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결산)

총학생회장은 회계연도 만료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감사)

총학생회는 회계연도 말에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 대의원회의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회계년도)

총학생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로 한다.

## 제3장 대의원회

제23조 (구성)

- ① 대의원회는 계열(학과)의 과대표로 구성한다.
- ② 총학생회 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24조 (임원 및 임무)

- ① 대의원회는 의장, 부의장, 간사로 한다.
- ② 대의원회의 의장, 부의장은 대의원중에서 직선으로 선출한다.
- ③ 의장은 대의원회를 주재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간사는 대의원 회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제25조 (업무 및 권한)

대의원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회 소집 요구권
- ② 학생회칙개정에 대한 발의
- ③ 학생회비의 예산,결산 심의 및 승인
- ④ 학생회 임원에 대한 출석 및 답변요구
- ⑤ 학생회장 및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권
- ⑥ 대의원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⑦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26조 (회의)

- ①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와 학기말에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학생회의 요구 및 학교당국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④ 의장은 안건을 명시하여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27조 (의결)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제25조 2호, 6호는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28조 (의무)

대의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즉시 학생회에 통보해야 한다.

#### 제29조 (심의기한)

학생회에서 제출된 제반 안건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산은 학생회의 동의 없이 증액 또는 신설할 수 없다.

#### 제30조 (정·부학생회장 불신임결의)

- ① 대의원회는 정·부학생회장이 본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 ② 불신임 결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 단, 차기 학생회장 선거일 이전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제4장 동아리 연합회

#### 제31조 (지위)

동아리 연합회는 본교에 등록된 전 동아리를 대표하는 기구이다.

#### 제32조 (승인)

동아리의 조직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33조 (구성)

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 연합회에 등록된 모든 동아리로 구성한다.

#### 제34조 (임원)

- ① 동아리 연합회장은 동아리 회장단 회의에서 선출되며 부회장 및 분과위원장을 임명한다.

- ② 동아리 연합회장은 동아리 연합회를 대표한다.
- ③ 동아리 연합회장은 대의원회, 집행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 제35조 (업무 및 권한)

- ① 동아리 연합회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대학 문화 창달에 필요한 고유의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 ② 동아리 연합회장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종의사 결정에 반영시킨다.

#### 제36조 (동아리의 활동제한)

승인을 받은 동아리가 아니면 동아리 연합회 일체의 조직과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37조 (회칙)

동아리 연합회는 학칙과 학생회칙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자체회칙을 가진다.

## 제5장 선 거

#### 제38조 (선거)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회 및 계열(학과) 대표 선거규정에 따른다.

## 제6장 보 칙

#### 제39조 (회칙개정)

- ① 학생회칙의 개정은 대의원 1/2이상의 찬성 및 집행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대의원회에 회부한다.
- ② 이 개정안은 대의원회에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③ 대의원회 및 집행위원 소집이 불가능할 시 총장의 승인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제40조 (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시행일)

이 회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6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8년 1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제7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1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부서명	부장	차장	본장 업무
총무부	1	2	총학생회의 제반사업의 서무, 문서, 기타사항
문화부	1	2	학생의 문화 활동 및 정서함양
체육부	1	2	학생의 심신단련 및 체육대회
기획부	1	2	학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행사 기획 및 진행
복지부	1	2	학내외에서의 학생후생 및 복지활동
여학생부	1	2	여학생의 학내외 활동일체 및 친목
홍보부	1	2	총학생회 제반사항 홍보 및 학교홍보활동